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·복지위원회

2023년 보건소 소관기 금 운 용 계 획 안검 토 보 고 서



2022. 11. 1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·복 지 위 원 회

# 2023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1월 18일 전문위원 권 오 숙

#### 1. 기금현황

기 금 명						설치년도	설치목적	소관부서
식	품	진	항	기	급	2000	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	위생관리과

#### 2. 기금 조성 규모

(기준: 연도말 예치금, 단위: 천원)

기 금 명						2023년도말 조성액	2022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증감율 (%)
		합	계			618,486	959,232	△340,746	△35.52%
식	품	진	횽	기	급	618,486	959,232	△340,746	△35.52%

#### ○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,

202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으로 <u>6억 1,848만</u> <u>6천원</u>으로 전년 대비 3억 4,074만 6천원(△35.52%) 감소한 규모임

#### 3. 기금운용(수입·지출)계획

(단위: 천원)

키그며	수 약	2]	지 출		
기 금 명	항 목	금 액	항 목	금 액	
총 계		1,077,896		1,077,896	
	합계	1,077,896	합계	1,077,896	
식품진흥기금 (위생관리과)	·용자금 회수 ·예치금회수 ·이자 수입 ·기타 수입	· ·		259,410 200,000 618,486	

-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「서울 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에 근거하여 설치・운용하고 있으며,
  - <u>수입</u>은 전년 대비 1억 2,500만원 감소한 10억 7,789만 6천원으로, 융자금 회수액 1,670만원, 예치금 회수액 9억 5,923만 2천원, 이자수입 1,496만 4천원, 기타수입 8,700만원을 계상하였고,
  - <u>지출</u>은 비융자성 사업비(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, 식품 안전관리 사업) 2억 5,941만원(전년대비 450만원 증), 융자성 사업비 2억원, 예치금 6억 1.848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임

#### 4. 검토 의견

○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,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・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

-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·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, 정밀한 지출 금액·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, 기간,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 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함
-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기금사업은
  -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, 식중독예방 어린이공연 등 행사지원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사업과
  -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, 우수 업소 홍보영상 제작, 우수업소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이 있으며,
  -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활동 지원사업
    등이 있음
- 검토 결과,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- 기존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증한 배달 전문점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

### 참고

## 예산과 기금의 비교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■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	<ul><li>■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</li><li>■ 특정사업 운영</li><li>■ 특정자금 보유 운용</li></ul>	■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■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	■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	■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■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	■ 좌 동	■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,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■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	<ul><li>좌 동</li></ul>	■ 집행과정에서는 합목 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■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	■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	■ 좌 동
계획변경	■ 추경예산 편성	<ul><li>좌 동</li></ul>	■ 주요항목(분야・부문・ 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■ 지방의회 심의·승인	좌 동	<ul><li>좌 동</li></ul>